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각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09.3.1)

- 제4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①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9.1, 2009.3.1, 2012.3.1)
 - 1. 교내장학금(개정. 2009.3.1, 2012.3.1)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별표1)과 같다.
 - 2. 교외장학금
 - 가, 운정장학금
 - 나. 국가기관 연구보조금
 - 다. 기타 사회단체, 기업체,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 ② 장학금액, 지급시기 및 선발인원, 세부선발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3.1, 2012.3.1)
- 제5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장학금지급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없다.
 - 1.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3.0미만인 자. 단, 연구장려장학금은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4.0미만 인 자(개정 2017.12.15.)
 - 2. 복학 및 재입학자(성신장학금, 난향장학금에 한함)(개정 2010.9.1)
 - 3. 학점등록자
 - 4. 징계 중 이거나 직전학기에 징계 해제된 자
 - 5. 기타 학칙 위반자
- 제7조 (장학생 선발 및 확정) 해당학과(전공) 주임교수 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 제8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장학금은 장학금을 기탁한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 제9조 (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09.9.1., 2017.12.15., 2023.1.13.)
 - 1. 난향장학금, 연구장려장학금, 대학원활동장학금
 - 2. 교외장학금은 해당기관에서 이중 수혜를 허용하는 경우
 -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의2 (등록금 초과 가능 장학)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비성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3.)
 - 1. 연구장려장학금(생활비성)

- 2. 기타 장학금(생활비성)
- 3. 대학원활동장학금(생활비성)

(본조 신설 2019.8.21.)

- 제10조 (장학금의 환수) 장학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개정 2010.9.1)
 - 1.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이중 수혜 해당자(해당 금액)
 - 2. 미등록 휴학(전액)
 - 3. TA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해임(해당 기간의 장학금)(개정 2020.6.1.)
 - 4. 제적(전액). 단, 해당 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3.15.)
 - 5. 기타(해당금액)
- 제11조 (장학금의 이월) 장학금은 이월을 허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는 이월을 허용한다. (신설 2010.9.1, 개정 2012.3.1.)
 - 1.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TA 혹은 RA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개정 2020.6.19., 2024.3.1.)
 - 2.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학기 중 휴학을 할 경우
 - 3. 기타 장학금 지급 기관에서 이월을 허용할 경우
- 제12조 (준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별표1의 6.난향장학금은 201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6.14. 2019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별표1의 2.성신장학금과 12.향학장학금은 2019학년도 2학기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별표1의 14. TA장학금과 15. RA장학금은 2019학년도 2학기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0조, 제11조는 2019학년도 2학기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1.14. 2021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1.13. 2022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1.13. 2023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8.18. 2023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19. 2023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15. 2024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17. 2024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수정장학생에 대한 학부입학성적우수연계장학금 지급은 학부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표1_교내 장학금 종류 및 지급 대상> (신설. 2009.3.1.)(개정. 2010.9.1, 2011.3.1, 2012.3.1., 2012.9.1., 2017.12.15., 2018.02.09., 2019.03.01., 2019.6.14., 2019.8.21., 2020.6.1., 2022.3.1., 2023.4.14., 2023.8.18., 2025.3.1)

교내 장학금 종류 및 지급 대상

장학금 종류	지급 대상자	비고
1. 성적우수장학금	본 대학교 출신 성적우수 특별전형 입학자	-135
2. 성신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단, 신입생은 제외함	
	, , , , , , , , , , , , , , , , , , , ,	
3. 조교장학금	(삭제 2020.6.1.)	
4. 특별장학금	 가. 공무원(정규직에 한함)으로 재직 중인 자나. 정원외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 다. 기타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재직중인 자라.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과정 중인 타교생(단,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5. 사도장학금	 가. 국・공・사립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원. 단, 사립유치원 교원의 경우 유치원 교사자격증을소지한 자로서 교육청에 등록된 유치원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교육대학원에 한함)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관할구청에임명사항을 보고한 자(보육학과에 한함) 	정규학기 수업
6. 난향장학금	본교 입학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본교 학부 또는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자로 신·편입학 하는 자(단, 학점은행제학위취득자의 경우 특수대학원에 한함.) 나. 본교 대학원 석·박사학위취득자로 신입학하는 자다. 정부 초청 장학생사업 및 유학생 교류사업을 통해 입학한 유학생라.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편입학하는 자	연한 내 등록을 완료한 재학생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7. 복지장학금	성신학원이 설치한 학교의 정규직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8. 공로장학금	국가 및 학교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있거나 학교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자	
9. 학부입학성적우수연계장학금	학부에서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금(운정· 수정)을 4년간 지급받고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자	
10. 학·석사 연계 장학금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자	
11. 석·박사 통합 장학금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자	
12. 향학장학금	가계곤란자(국가 및 교내 정책에 따라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장학금 종류	지급 대상자	비고
13. 연구장려장학금	학업·연구계획 또는 연구논문 실적이 우수한 자	재학연한 내 등록을 완료한 재학생
14. TA장학금	본 대학교의 Teaching Assistant(TA)로 추천 받은 자	정규학기 수업 연한 내 등록을 완료한 재학생
15. RA장학금	본 대학교의 Research Assistant(RA)로 추천 받은 자	선료안 새학생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16. 대학원활동장학금	학생활동 실적이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부 합하는 자	
17. 기타장학금	장학금 지급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 어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